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대구대학교와 중앙교육연수원 업 무 협 약 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대구대학교(이하 "대구대")와 중앙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협약기관은 상호 협력에 있어 원칙적으로 상대 기관의 제 규정을 존중하고 호혜적인 차원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2조(목적)

본 협약은 대구대와 연수원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유기적 연대를 강화하여 상호 발전적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3조(협력사항)

대구대와 연수원은 제2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력한다.

1.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협력
2. 산학협력 · 평생교육 · 예술문화 등의 콘텐츠 공유 및 상호 협력
3. 양 기관의 교류·협력 사항 및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상호 협력
4.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적극 발굴 및 지원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본 협약 체결 후 기관의 명칭, 대표자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포괄 승계된다.

제5조(효력발생 및 협력기간)

본 협약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만기일 1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 폐기의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효력이 1년씩 연장된다.

제6조(비밀유지 의무)

대구대와 연수원은 협약 내용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등은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의 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본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3월 14일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총 장 홍 덕 률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원 장 배 성 근

대구 동구 첨단로 80